

## 후보와 독립 지출자 쌍방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정치 컨설턴트

정치 컨설턴트는<sup>1</sup> 후보와 독립 지출자를 위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본인과 의뢰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선거 운동 재무 위반에 대해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두 고객을 위해 업무를 수행할 때 후보자, 독립 지출자 및 컨설턴트는 법률 및 규칙을 위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지침은 컨설턴트에게 본인의 업무가 고객과 본인에게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FYI

미리 알림

후보와 독립 지출자도 이 지침을 검토하고 고용 중인 컨설턴트가 독립적이지 않은 활동으로 인해 선거 운동 재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두 가지 유형의 고객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뉴욕시에는 독립 지출에 적용되는 특정 규정이 있습니다. 후보의 선거 운동과 진정으로 독립적인 지출이 이루어지려면 후보자와 독립 지출자가 서로의 활동을 조율할 수 없어야 합니다. 컨설턴트가 후보와 독립 지출자 모두를 대리하여 활동하는 경우, 지출자의 활동은 독립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현물 기부금으로 후보에게 귀속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컨설턴트의 이중 역할로 인해 조정이 수행됩니다. 조정 사항을 보고하지 않으면 부적절한 보고 및/또는 허위 진술로 인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선거 운동에서의 지출 한도 초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컨설턴트가 선거 운동의 대리인 또는 독립 지출자로 간주되는 경우, 위원회는 컨설턴트에게 이러한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규칙은 어떻습니까?

이 지침과 관련하여, 규칙 6-04(a)(vii) 및 (viii)에 따르면 CFB는 지출이 독립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vii) 후보 또는 후보가 맡고 있는 공공 또는 민간 공직 또는 정부 기관, 부서 또는 사무실을 포함하여 후보가 지배하는 단체가 지출이 발생하는 동일한 선거 기간 동안 지출을 하는 사람 또는 지출을 하는 단체의 주요 구성원 또는 직책 또는 관리 직원의 직업상 서비스를 유지했는지 여부, 및

(viii) 후보와 지출을 하는 사람 또는 단체가 각각 동일한 제3자 또는 정당과 협의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소통했는지 여부, 후보가 제3자 또는 정당과의 연락 또는 관계에서 후보자에게 이익이 되는 지출을 알리거나 유발할 수 있음을 인지했거나 인지했어야 하는 경우.

<sup>1</sup> 이 지침의 목적에 따라 “컨설턴트”에는 컨설팅 조직을 설립, 유지 또는 지배하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당 개인 또는 단체가 설립, 유지 또는 지배하는 모든 법인이 포함됩니다.

## 비독립적이라고 일반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컨설턴트가 차단책 또는 기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라도 일반적으로 독립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컨설턴트** - 개인 컨설턴트는 후보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 지출자를 위해 수행되는 업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개인 컨설턴트의 독립 지출자가 후보자 고객 중 한 명을 대리하거나 후보자 고객의 상대방 중 한 명에 대한 공세를 위해 지출된 모든 지출은 독립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예비 선거를 목표로 하는 조직** - 컨설턴트가 후보와 독립 지출자(그중 한 명의 주요 목표가 해당 후보자의 지명 또는 선거를 진행하거나 해당 후보의 상대 후보 중 한 명 이상의 지명 또는 선거에서의 낙선을 유도하는 것임) 모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독립 지출자의 지출은 비독립적 지출로 간주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후보가 참여하는 정치 위원회가 포함됩니다.
3. **이중 대리인** - CFB가 컨설턴트를 후보 및 독립 지출자의 대리인으로 판단하는 경우,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대부분의 일반 및 전략적 컨설턴트 관계뿐만 아니라 후보 또는 독립 지출자의 총 지출의 50% 이상이 컨설턴트에게 배정되는 경우.
  - 컨설턴트가 정기적으로 비즈니스 거래 또는 협상의 수행을 지원하는 등 고객을 대리하여 행위하는 경우.

## 위의 상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컨설턴트가 불법적인 조정으로부터 본인의 업무와 고객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가지 유형의 고객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컨설턴트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별도의 그룹으로 고용하거나 분리하여 차단책을 구축해야 합니다. (1) 후보 관련 업무만 수행하는 직원("후보 배정") 및 (2) 독립 지출자의 업무만 수행하는 직원("IE 배정").

컨설턴트의 직원은 예비 선거 또는 총선거로부터 1년 이내 또는 보궐 선거로부터 3개월 이내에 두 유형의 고객의 계좌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 컨설턴트는 후보와 독립 지출자 계좌를 담당하는 직원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컨설턴트는 고객의 계획, 전략, 프로젝트, 활동, 요구 사항, 리소스 또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고객에 대한 기타 정보에 대해 후보로 배정된 직원과 IE로 배정된 직원 간의 소통을 금지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참고: 감독자이기도 한 개별 직원은 후보 계좌와 IE 계좌 모두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감독할 수 없습니다.**



### 규정 준수 알림

**한 명의 개인이 컨설팅 회사 또는 조직을 소유, 지배 또는 관리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예비 선거 또는 총선거로부터 1년 또는 보궐 선거로부터 3개월 동안 후보 배정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만 감독하거나 IE 배정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만 감독하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 어떤 추가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나요?

서면 정책에서 다음 유형의 직원은 후보 계좌에서만 업무를 수행해야 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1. 고객인 후보의 직계 가족.
2. 가장 최근 고용주 또는 상사가 고객인 후보였던 직원.
3. 고객인 후보의 선거 운동에 직업상 서비스를 제공했거나 고위직 또는 자문 역할을 수행한 직원(컨설턴트로 고용된 후 1년 이내).

다음 유형의 직원은 독립적인 지출 계좌에서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개인 독립 지출자 또는 고객인 독립 지출자를 소유/지배하는 개인의 직계 가족.
2. 가장 최근 고용주 또는 상사가 고객인 독립 지출자였던 직원.
3. 고객인 독립 지출자에게 직업상 서비스를 제공했거나 고객인 독립 지출자를 위해 고위직 또는 자문 역할을 수행한 직원(컨설턴트로 고용된 후 1년 이내).

[CFB 자문 의견 2009-7](#)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정 지출이 독립적 또는 독립적이지 않은지의 여부는 반드시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CFB는 활동의 맥락과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최종 판단을 내리며, 모든 컨설턴트, 후보자 및 독립 지출자는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CFB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후보는 (212) 409-1800번으로 전화하거나 [CandidateServices@nyccfb.info](mailto:CandidateServices@nyccfb.info)로 이메일을 보내 후보자 직속 부서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컨설턴트 또는 독립 지출자는 (212) 409-1800번으로 전화하거나 [Email@nyccfb.info](mailto:Email@nyccfb.info)로 이메일을 보내 특별 규정 준수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